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54 발의연월일: 2025. 1. 31.

발 의 자: 강민국·박덕흠·정동만

이상휘 · 강명구 · 이헌승

김재섭 · 김태호 · 김상훈

권성동 • 유영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 인 제도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고자 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 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 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 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 도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지를 두는 등 형식적 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을 "지정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로, 같은 항 제1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 조제3항제3호"로, "보호책임자의"를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 인

제75조제3항제2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

- 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의2와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	
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	
라 한다)를 <u>지정</u> 하여야 한다.	<u>지정하고, 지정</u>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된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
문서로 하여야 한다.	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
	<u>감독을</u>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	1. 제31조제3항제3호
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u> 및 피해 구제</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2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후단 신설>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
	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신 설>

<신 설>

- ③·④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u>아니</u> <u>한</u> 자

<신 설>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 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 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 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3) -----
- 1. (현행과 같음)
- 2. -----

<u>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u> 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2 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 ~ 12. (생 략)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